

법무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과료)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수배 해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절차의 적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고,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벌과금납부명령서 등의 납부안내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식 등을 개선하며, 검사의 직권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결정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대검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31. ~ 7. 1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 판결결과 통지표”를 “법원으로부터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재판결과통지서, 판결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
2.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

제12조제3항 중 “직권”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지명수배자로서”를 “형집행장에 의해”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형집행장에 의한 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 납부의무자로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3(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벌과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
2. 검거되거나 자발적으로 노역장유치집행에 응한 때
3. 벌과금 분할납부·납부연기 또는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는 때
4. 형의 시효 완성 또는 사면한 때
5.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집행불능 결정이 있는 때
6. 벌금·과료 미납액이 환형유치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지명수배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검사는 재난관리,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과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금형 집행유예(선고유예) 실효·취소, 보호관찰 등 집행

제8장에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금형 집행유예 조정)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형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조정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재차 벌과금을 조정하여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벌금형 집행유예의 실효 등) 「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에 집행유예 실효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37조(벌금형 집행유예의 취소 등) ①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의한 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

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② 법원의 집행유예선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38조(벌금형 집행유예 실효등 통보) ① 공판사무 담당직원은 벌금형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의한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에 의한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61조”를 “「국세징수법」 제103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별지 중 “「국세징수법」 제29조”를 “「국세징

수법」 제34조”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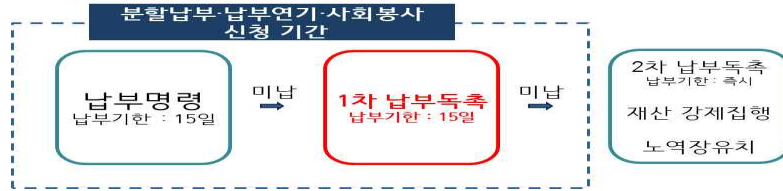
별지 제53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5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예금주가 '검찰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이용가능시간: 00:30 ~ 23:50(365일가능)

인터넷·모바일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 본인 명의 카드
 - 인터넷·모바일 납부 방법과 동일
-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카드 납부
 - 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법인카드는 사업자 등록증 지참)
- 납부 유의사항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신용카드 - 납부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 할부 및 이자는 카드사에 문의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카드(신용카드 포함) 또는 통장 투입 → 국세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 안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신청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 ③ 장애인
 -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⑧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ex)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 분납·납부연기 기간: 최대 6개월

사회봉사 신청

- 사회 봉사: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근로 등 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 하는 제도
- 신청 기간: 납부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신청 장소: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 신청대상자: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70/100 이하인 사람
 -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 아래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 가능
- ① 가족 중 질병이나 중상해, 장애로 장기치료 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 ② 화재 또는 수해 등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 ④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 ⑤ 소득금액 대비 채무가 많아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⑥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ex) 폐업 등

벌과금 미납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특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 : 1301(검찰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별과금 납부안내

[별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 [별과금 입금전용 계좌]**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예금주가 '(검찰청)성명'이며 별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이용가능시간: 00:30 ~ 23:50(365일가능)

- 인터넷·모바일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별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 본인 명의 카드
 - 인터넷·모바일 납부 방법과 동일
 -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카드 납부
 - 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법인카드는 사업자 등록증 지참)
 - 납부 유의사항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신용카드 - 납부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 할부 및 이자는 카드사에 문의

-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카드(신용카드 포함) 또는 통장 투입 → 국세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 안내]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신청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③ 장애인
 -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⑧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ex)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 분납·납부연기 기간: 최대 6개월

- 사회봉사 신청**
- 사회 봉사: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근로 등 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 하는 제도
 - 신청 기간: 납부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신청 장소: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 신청대상자: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70/100 이하인 사람
 -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 아래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 가능
 - ① 가족 중 질병이나 중상해, 장애로 장기치료 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
 - ② 화재 또는 수해 등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 ④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 ⑤ 소득금액 대비 채무가 많아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⑥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ex) 폐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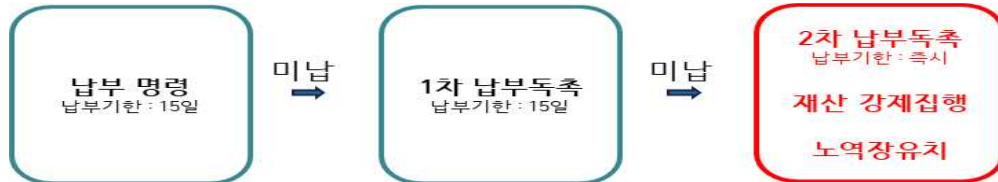
별과금 미납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특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 : 1301(검찰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뒤 쪽)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 ● 예금주가 '(검찰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이용가능시간: 00:30 ~ 23:50(365일가능)	직접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카드(신용카드 포함) 또는 통장 투입 → 국세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인터넷·모바일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 본인 명의 카드 - 인터넷·모바일 납부 방법과 동일 ● 타인 명의 또는 법인 카드 납부 - 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법인카드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 납부 유의사항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신용카드 - 납부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액의 0.5% ※ 할부 및 이자는 카드사에 문의

[강제집행 · 노역장유치 안내]

강제집행 ●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77조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 신용정보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노역장유치 ● 근거법령: 형법 제70조 ● 노역장유치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납부 의무자를 자유형의 형태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절차
---	---

※기타 문의전화 : 1301(검찰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 분할납부
[] 납부연기 결정서

년 징제 호	담당자	집행주무	집행과장

납부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죄 명	
벌과금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분할납부 금액	
납부 시기 및 방법	
직권 결정사유	

취소 연월일	검 사 (서명 또는 인)
취 소 사 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벌과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검찰청(지청)

검 사 인

공매대행 의뢰서

채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는 거 소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종 목	
압 류 재 산 의 표 시		(별지의 압류조서와 같음)		
매각에 관계된 벌금 체납액의 내용				
종 류	징제번호	금 액	납부기한	비 고
「국세징수법」 제103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검찰청 검사 인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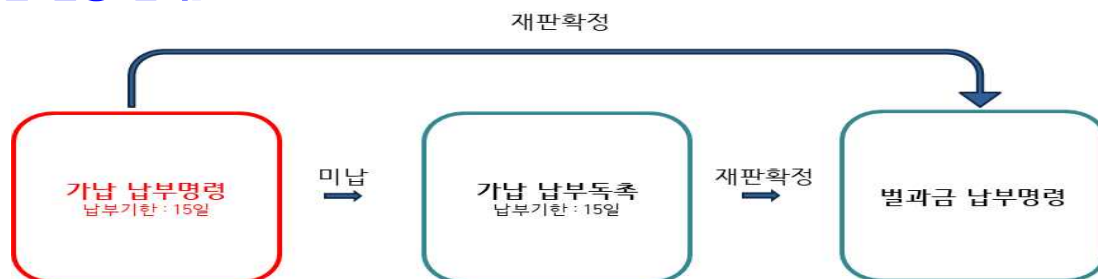
압류조서

체납자	성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일시					
압류장소					
압류재산의 표시(별지 압류 목록과 같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종 류	징 제 번 호	금 액	납 부 기 한	비 고	
1. 압류물건은 재산형등 집행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하고 압류표에 의한 봉인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체납자에게 보관시켰습니다. 2.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재산형등 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3. 이 절차는 같은 날 00:00에 종료하였습니다. 위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압류장소에서 의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검찰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가납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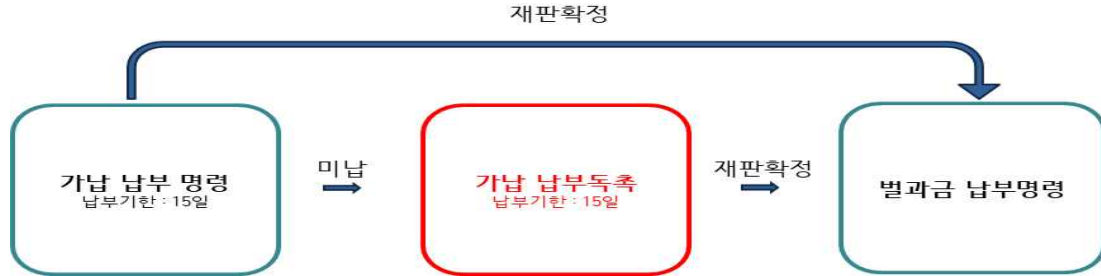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인터넷·모바일 납부 (카드 결제 불가)	직접 납부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예금주가 '(검찰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이용가능시간: 00:30 ~ 23:50(365일가능)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 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 입출금기) → 통장 투입 → 국세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가납 벌과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 : 1301(검찰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가납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인터넷·모바일 납부 (카드 결제 불가)	직접 납부
●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예금주가 '(검찰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 이용가능시간: 00:30 ~ 23:50(365일가능)	●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 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통장 투입 → 국세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가납 벌과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 : 1301(검찰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 ○ ○ ○ 검찰청

징집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검 사: ㉠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

아래와 같이 벌금형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형 선고유예의 실효 청구를 합니다.

유 예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판 결	선 고	
	벌 금 액	
	확 정	
유 예	시 기	
기 간	종 기	
(청구사유)		
1.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대상사건은 별첨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0000. 00. 0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취소청구 대상사건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움		
2.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 대상자는 위 유예기간 중 별첨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음 / 대상자는 별첨 판결등본과 같이 000 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움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징집

수 신: 집행과장

발 신: 공판과장

제 목: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취소통보**

①인

「형법」 [] 제63조 [] 집행유예
의 [] 제61조 [] 선고유예
실효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재산형 등 집행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집행유예

성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명	선고법원	벌금액

2. 재범

성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명	선고법원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등록기준지:

현 주소:

생년월일: . . 생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징집 . . .

수 신: 지방검찰청 지청 발 신: 검찰청

제 목: []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취소통
[] 벌금형 선고유예 보 검 사: 인

「형법」 [] 제63조 [] 집행유예
의 실효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 제61조 [] 선고유예

재산형 등 집행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집행유예

성 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 명	선고법원	벌금액

2. 재 범

성 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 명	선고법원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등록기준지:

현 주 소:

생년월일: . . . 생

210mm × 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재판의 파악 등) ① 재산형 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u>별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 판결결과통지표, 약식명령,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별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u> <u>다만, 별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u>	제5조(재판의 파악 등) ① ----- ----- 법원으로부터 별과금등에 관한 재판 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u>재판결과통지서, 판결문</u>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별과금등의 조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u>별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과금등을 조사·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u>	제6조(별과금등의 조정) ① ---- ----- 다 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u>지체없이</u> ----- ----- -----.
<신설>	1. <u>별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u>

② ~ ⑥ (생략)

제12조(분할납부 등) ①·② (생략)

③ 검사는 별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4조(별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별과금등을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된 때

2. 별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별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분할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에 따라 직권-----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별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

-----.

벌과금등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명수배자로서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2. (생략)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

-----.

1. 형집행장에 의해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① -----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체납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 설>

<신 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형집행장에 의한 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 납부의무자로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3(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벌과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
2. 검거되거나 자발적으로 노역장유치집행에 응한 때
3. 벌과금 분할납부·납부연기 또는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는 때

<신 설>

<신 설>

<신 설>

4. 형의 시효 완성 또는 사면한 때

5.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집행불능 결정이 있는 때

6. 벌금·과료 미납액이 환형유치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지명수배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검사는 재난관리,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과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장 벌금형

집행유예(선고유예) 실효·취소, 보호관찰 등 집행

제34조(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금형 집행유예 조정) 재

<신 설>

<신 설>

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형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조정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재차 벌과금을 조정하여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벌금형 집행유예의 실효 등) 「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에 집행유예 실효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37조(벌금형 집행유예의 취소 등) ①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 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② 법원의 집행유예선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38조(벌금형 집행유예 실효등 통보) ① 공판사무 담당직원은 벌금형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의한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신 설>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에 의한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벌금형 선고유예 실효 절차에의 준용)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